

# 사회복지 주간 동향(24.1.29.~2.2.)

## 1. 용인시 정책 동향

###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더블유스타일베이커리 지역복지협력기관 지정



- \* 용인특례시 수지구 동천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대식)가 지역 소재 상점 더블유스타일베이커리(대표 우경수)를 지역복지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힘
  - 협의체는 5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정기 후원하거나 100만원 이상을 일시 기부하는 점포 또는 기관을 지역복지협력기관으로 지정
  - 더블유스타일베이커리는 지난 2022년부터 1년간 매주 직접 구운 빵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 189가구에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옴
    - 우 대표는 “빵에 담긴 온기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후원해나가겠다”며 “작은 정성이나마 다양한 기부활동을 이어가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함
    - 동 관계자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준 더블유스타일베이커리에 감사하다”며 “동천동이 더욱 따뜻한 생활 공동체로 만들도록 어려운 이웃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천동 행정복지센터)

##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사랑은 추울 때 움직이는 것” 오늘도 36.5도 용인

< [2024. 1. 21] 연말연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따뜻한 시민의 ‘나눔특례시’ >

- \* “사랑은 추울 때 움직이는 것” 이것이 용인특례시 이웃돕기 릴레이인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를 표현하는 한마디가 아닐까 한다. 오늘도 36.5도 체온을 지닌 용인의 가슴이 뛰고 있다. 많은 시민과 단체들의 기부 열기가 그 온기를 유지하는 힘이다. 이번 한 주간 사랑의 열차에는 누가 탑승했을까?
- \* (주)나무유통 수지상현점 최윤희 대표 성복동에 1000만원 기탁
  - 수지구 (주)나무유통 수지상현점(대표 최윤희)이 지난 16일 성복동에 저소득 취약 계층을 위한 성금 1000만원 기탁, 최윤희 대표는 수년째 기부금을 마련해 온 최 대표는 “어릴 적 이웃을 돕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 기부를 시작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함
- \* 두산건설, 동백3동에 500만원 상당의 이웃돕기 현금과 현물 기탁
  - 두산건설과 협력사 직원들은 지난 17일 동백3동에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 2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전기매트 15개를 기탁
    - 김진홍 두산건설 소장은 “동에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 시공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 기탁하게 됐다”며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함
- \* 죽전2동, 로템교회 올해에도 어려운 이웃에게 500만원 상당 라면 전달
  - 로템교회(목사 김진철)는 지난 12일 성탄절 라면 콘서트를 열어 모은 라면 6140개(500만원 상당)를 죽전2동에 후원
  - 기탁받은 현물은 취약계층과 지역 장애인시설(해오름의집), 청소년쉼터(용인푸른꿈), 지역아동센터(수지, 무력무력, 친구와함께) 등 6개 기관에 전달
  - 라면 콘서트는 2015년부터 매년 성탄절에 열려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입장료 대신 라면으로 기부받고 있음
    - 김진철 목사는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함
- \* 수지구, 생신 맞은 취약계층 홀로 어르신에 케이크 전달
  - 수지구는 지난 15일 생신을 맞은 80세 이상 취약계층 홀로 어르신 네 분의 가정을 방문해 3만원 상당의 케이크와 생신 축하금 10만원을 전달
  - 구는 2017년부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지구로 기탁받은 성금과 후원물품으로 80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신축하 사업을 진행, 올해는 53명의 홀로 어르신에 지원할 예정으로 수지 신협에서 후원받은 150만원 상당의 케이크를 전달, 구 이웃돕기 성금으로 마련한 생신 축하금은 계좌로 이체

- \* 보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착한 나눔 실천 업체 4곳에 현판 전달
  - 지난 19일 보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명옥)는 착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업체 4곳에 '지역복지 협력 기관 현판'을 전달
  - 현판을 전달한 4곳은 협의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정기 후원하는 냉면장인 인사부&국밥 보라점(대표 정병건), 한전MCS 서용인지점(대표 장경민)과 연 500만원 이상 고액 기부한 (주)피제이피테크(대표 박경신), 딸기어린이집(원장 최미영)
  - 협의체는 2020년 12월부터 협의체 특화사업 협력 및 이웃돕기 정기기탁에 참여하는 업체에 현판을 전달하고 있음
- \* 상하동 통장협의회 성금 300만원 기탁
  - 상하동 통장협의회(회장 목건수)는 지난 19일 기흥구 상하동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기탁, 이번 성금은 올해부터 인상된 통장수당 10만원을 상하동 21개 통장들이 모은 금액에 목건수 통장협의회장이 90만원을 더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공보관 공보협력팀)

###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 양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20가구와 결연 맺고 지원



- \*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은 2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소영)가 홀로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20가구와 결연을 맺고 초록동행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힘
- 협의체는 위원 20명이 일대일로 대상인 20가구를 방문해 다육이 등 식물이 담긴 화분과 간식 등을 전달하며 유대를 형성하고, 이후 매주 1~2회 안부 전화 또는 가정 방문을 할 예정
- 이소영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겨울철 춥고 힘든 시기에 사랑을 베풀고 나눔에 앞장서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함
- 면 관계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취약계층에 따뜻한 나눔을 이어 오고 있어 감사드린다”고 밝힘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양지면 행정복지센터)

##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 1 중앙정부 복지현안

#### 올해부터 부모급여 인상하여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지급

< 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  
< 2024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부모급여 인상 >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 올해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됨(기존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 지난 11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음, 위 조사와 같이 많은 양육가구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가 될 거라 예상

- 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②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③ 가족친화적 주거서비스 ④ 양육비용 부담경감 ⑤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1.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함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함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2.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 \*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일(목)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일 25일에 입금, 부모 또는 아동 명의계좌로 받을 수 있음
  -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원받는데,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됨,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됨(1세 반인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됨
-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됨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 최고 209.3만 원 지원
  - 부모급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유튜브(복따리TV)에 게시되어 있는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 참고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조

## 2 중앙정부 복지현안

###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본인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편리하게 온라인 감면 적용 가능 >  
< 이외에도 상이 보훈대상자(3~7급) 대상 활동 지원 신청 허용 등 내용 담은 대통령령 개정 >

- \*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힘
-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첫째, 장애인이 온라인 예약,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이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으로 장애인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앞으로 다양한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장애인 편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
  - 둘째,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전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규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상이 3~7급 보훈대상자가 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상이 1~2급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의 간호수당 수급 대상자이므로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유지
    - 이는 지난 '23.4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65세 미만 상이 3~7등급 보훈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공백 해소 및 예우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반영
  - 셋째, 장애인학대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시 신분조회 절차 등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함
    -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등록 및 가족관계증명 등 관련 신분조회 요청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통계의 생산·관리 등을 수행
  - 넷째, 장애인 생업지원 제도상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우선 허가 대상 연령 요건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장애인 생업지원 대상 세대주 연령 제한 기준을 개선
    - ※ 보도자료 참조(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3 중앙정부 복지현안

## 사회약자 보호, 경제활력 제고 위해 노인일자리 등 신속집행 당부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복지부 재정 일자리사업 진행상황 점검 위한 시도회의 개최 >  
 < 연간 목표 일자리 수 117만 개 중 97% 이상 상반기 중 신속 모집 독려 >

- \* 보건복지부 1차관은 1월 30일(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제공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진상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시·도 복지국장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는 2024년 노인 일자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자활사업, 장애인 일자리 등 4개 사업을 통해 117만 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약 3조 4446억 원이 투입
  - 특히 올해에는 천만 노인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88.3만 개에서 103만 개로 대폭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을 2,435명 증원(36,524명 → 38,959명)하였으며,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각각 3천 개, 2천 개 확대

< '24년 보건복지부 일자리사업 >

(단위: 백만 원, 명)

사업명	'23년		'24년		비고
	예산	인원	예산	인원	
노인일자리	1,531,690	883,000	2,017,628	1,030,000	4859억원, 147천명
노인맞춤돌 봄서비스	501,981	36,524	546,105	38,959	441억원, 2.4천명
자활사업 (자활근로)	609,393	66,000	659,462	69,000	501억원, 3천명
장애인 일자리지원	207,299	29,546	222,695	31,546	154억 원, 2천명

- 복지부는 연간 목표 일자리 수(117만 개)의 97% 이상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모집해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일자리 확충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함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재정운영담당관실)

**4 중앙정부 복지현안**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20,519명 전수조사해 안전확인, 그 중 2,577명 복지서비스 연계**

< 아동 1명은 경찰에서 소재·안전 확인 중 >

- \*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힘
-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는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등에 따라 3세가 되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임, 조사 후 필요한 경우 양육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처음 실시하여 매년 4분기(10~12월)에 실시
  - (조사대상) 전년도 말일 기준 3세 아동(2019년생)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하지 않는 가정양육아동
  - (3세 선정이유)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어린이집, 유치원)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
-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가 조사대상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
- 조사대상 아동은 총 20,519명으로(2019년 출생아동 308,914명 중 6.6%), 지난해(24,756명)에 비해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생아동 감소 등에 따른 것
  - (연도별 출생아 수) 332,787명('18년생) → 308,914명('19년생)

[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대상]

출생 아동	어린이집 재원 아동	유치원 재원 아동	해외체류 아동 등	조사대상 아동
308,914명 (100.0%)	147,699명 (47.8%)	132,119명 (42.8%)	8,577명 (2.8%)	20,519명 (6.6%)

- 담당 공무원이 직접 아동 20,519명의 소재·안전을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99.94%(20,506명)가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 중 2,577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드림스타트 등 아동 발달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 이는 지난해 2,078명 보다 약 24% 증가한 것으로, 서비스연계를 통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생계급여 등 공적제도 신청지원 및 식료품 등 민간자원 연계 1,875건,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 15건,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 연계 696건, 0~12세 취약계층 아동 지원(드림스타트) 17건

**[필요서비스 연계 사례]**

**① (A가정)**

△(아동) 신체적 발달단계는 보통 수준이나, 언어발달이 현저히 느림  
 △(가정환경) 관리비 체납 및 교육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공적  
 급여 신청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 ☞ (조사결과) 가구단위의 사례관리로 연계하여 공적급여 등 신청 필요
- ☞ 1) 안정된 주거 지원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비(지원비-생활  
 지원비) 지원
- 2) 형제의 체계적인 교육 → 교육급여, 초중고교육비 신청
- 3) 긴급 생계 지원 → 식료품, 이불 등 후원물품 제공 및 압류방지통장  
 개설 안내

**② (B가정)**

△(아동) 희귀질환으로 인한 양육 및 의료비 지원 필요  
 △(가정환경) 다자녀가구로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존재

- ☞ (조사결과) 가구단위의 경제적·정서적 복합지원을 위해 사례관리로 연계 필요
- ☞ 1) 아동의 발달 지원→장애아동활동바우처 신청 및 복지원재활치료사업 안내
- 2) 형제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학업지원사업(인터넷 강의, 도서지원 등)  
 연계 신청

**③ (C가정)**

△(아동)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미흡함  
 △(가정환경) 집안이 깨끗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음

- ☞ (조사결과) 부모는 아동 발달이 느린 걸 인지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의 진료 및 양육기술학습 등 도움받길 원함
  - ☞ 1) 아동의 정확한 발달상태 파악 → 언어발달검사 및 신체적 진료 지원 신청
  - 2) 아동 발달 상황에 알맞은 어린이집 추천
- 3) 체계적인 아동 교육 지원 → 드림스타트 연계

- 또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없었으나, 소재파악 곤란 등으로  
 13명이 경찰에 수사의뢰되어, 그 중 12명의 소재·안전은 확인, 남은 1명  
 아동의 안전도 신속히 확인할 예정

**['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결과]**

대상자	지자체 공무원이 아동 소재·안전 확인	경찰 수사의뢰		
		소계	이상없음	수사 중
20,519명 (100%)	20,506명(2,577명 복지서비스 연계) (99.94%)	13명 (0.06%)	12명	1명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5 중앙정부 복지현안**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치매환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전국 실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권고, 장애인 위한 치매검사 절차 마련 등 치매환자 지원 강화 >**

- \*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매정책 관련 사업의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개정하였다고 밝힘
  - 이번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지방자치단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 확대 권고 ▲치매안심센터에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둠
- \*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 지난해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했던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을 2024년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 운영할 예정
    -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은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의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
  -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18개 치매안심센터의 시범 적용 결과를 근간으로 사례관리 기능 고도화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자 선정기준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로 확대를 권고
    -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20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40%	3,120,000	5,156,000	6,601,000	8,022,000	9,375,000
기준 중위소득 120%	2,675,000	4,420,000	5,658,000	6,876,000	8,035,000

-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 등에 따라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이 부여된 지방이양사업(2022년~)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게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

[참고]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지자체 현황(2023.12월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소득기준 폐지) 경기도 안성시·양평군, 강원도 태백시, 충청남도 예산군, 전라북도 전주시·군산시·남원시·완주군·진안군·순창군·부안군, 전라남도 목포시·순천시·광양시·함평군·영광군, 경상남도 창원군·합천군

- \* 장애인 대상 치매안심센터 치매검사 절차 마련
    - 현행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는 다음 3단계로 진행 중
    - ① (선별검사) 인지선별검사(CIST\*)로 인지기능을 평가하여 치매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를 선별
    - ②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협력의사) 또는 협약병원에서 신경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치매 여부를 진단
    - ③ (감별검사)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뇌영상 검사 등 보다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원인을 분석
  - 그동안 일부 장애인은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선별검사(CIST)가 곤란 하였으며 이러한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등록장애인 중 인지선별검사(CIST)가 불가능한 경우, '설문지를 통한 선별검사'(SMCQ 또는 KDSQ) 등으로 대체 실시하고, 검사 결과'인지기능저하 의심(6점 이상)'으로 판단 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면담 후 바로 협약병원에서 감별검사로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 치매환자쉼터 이용대상 확대
    - 기존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치매환자 중 '인지지원등급'만이 치매사례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를 이용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장기요양 5등급'도 가능하도록 함
    -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 2월 중 제공할 예정
- ※ 보도자료 참조(노인정책관 노인건강과)

## 6 중앙정부 복지현안

### 2024년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 17개 시도 한데 모여 차질 없는 시행 논의

- \*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목) 올해부터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의 내용과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힘,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도입되거나 변화하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출생통보제 시행 ▲임신 사전 건강관리 신규 지원 ▲법 개정에 따른 입양제도 개편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공유하고 시·도의 의견을 수렴함
- \*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
  - 올해 7월 19일부터,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 설치,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도 제공,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회의에서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 \* 출생통보제 시행
  -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올해 7월 19일,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도 시행,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됨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또한 올해 4월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사(난소기능검사(AMH) 등)를 받으면 그 비용을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음,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가능, 사실혼 및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도 지원
- \* 입양제도 개편 추진
  - 지난해 「입양특례법」이 「국내입양특례법」과 「국제입양법」으로 제·개정되며,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입양기관에서 수행 중인 입양 업무 전반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예비양부모의 자격심사와 결연 등 핵심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결정

- \*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통장, 지금까지는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아동이 0세부터 17세 사이라면 신청 가능,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생계·의료급여) 50%이하로(주거·교육급여까지) 완화
- \*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판단하기 전에 신속하게 아동을 지원하거나,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예방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한 지원 유형을 선택하여 아동과 그 가족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계획하여 시도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함

※ 보도자료 참조(인구아동정책관 아동복지정책과)

### 3. 통계로 보는 복지

#### 1 증양 통계현안

##### 「저출산 통계지표」 주요 지표(안)



[저출산 통계지표 주요 지표(안) 목록]

영역	부문	지표
출산 현황	○ 출산력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 혼인력	혼인건수, 연령별 유배우율, 평균초혼연령
	○ 의향	결혼에 대한 견해, 자녀에 대한 견해
결정 요인	○ 가족형성조건	청년층 평균 가구소득, 청년 고용률, 청년 정규직 근로자 비율
	○ 양육 및 돌봄	성별 가사노동시간, 성별 육아시간
	○ 가치관 및 인식	결혼하지 않는 이유
가족 정책	○ 지출규모	보육기관에 대한 공적지출, 학교급별 사교육비
	○ 결혼 및 출산 지원	임대주택 공급현황, 난임검사 지원 현황, 영유아기 지원 수당 규모
	○ 양육지원	보육시설 이용률,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
	○ 시간지원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출산 전·후 모의 취업비중

※ 자료 : 통계청 자료(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